

이민 문제와 새로운 정치 형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인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미국 장로교(PCUSA)

이전보다 더 큰 자유와 융통성을 지닌 새로운 정치 형태는 교회들과 공의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또한 이들이 선교하는 일에 어떻게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준다. 계급적이고 수직적이기보다 더 수평적인 구조로 개편된 새로운 정치 형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인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실천해나아가는데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기를 권고한다.

하나님의 선교(F-1.01)

규례서는 맨 먼저 “하나님의 선교”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함으로 시작한다.¹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적 실재를 드러내어,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관계적 실재를 반영하도록 요청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깨닫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에 의해 결합된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를 반영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는 또한 평등과 일치와 다양성의 모델이 된다.² 교회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주하셔서(migrate)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해방시키시고 보내시고 그들을 먼 열방들로 부르시기로 선택하신 분에 의해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교회는 인류와 피조물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반과 성만찬을 통한 은혜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초청한다.³

교회의 소명(F-1.03)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는 일에 힘쓰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서(고전 12:27-28), 교회가 이미 약속된 새로운 피조물의 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증오로 가득 찬 분열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⁵ 교회가 일치(혹은 연합)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려 해야 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유익을 자기들만 즐기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⁶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들이 되어갈 때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예배와 섬김의 삶을 나누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통치를 수립함으로써 고통받고 억압 받는 자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된다.⁷ 교회는 우리 나라의 이민법과 정책들이 우리 나라 이민 가족들의 필요들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 일 또한 교회가 부름 받은 소명이기도 하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이민자들을 위한 “지지와 환영,”(Advocacy and Welcome)—여기에는 분리된 가족들이 서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을 관허없이 합법화 해주는 방법의 모색, 그리고 국경에서 인도적 보호를 보장해 달라는 광범위한 접근법을 요청했다.⁸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어 놓기(F-1.04)

장로교인들로서, 우리들은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된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가운데 항상 개혁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세례 시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입혀 주신 성령님에 의해 이러한 미래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 노예나 자유자가 없으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러한 일치는 우리 모두가 다양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미국 장로교 헌법은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과 그룹들에게 예배와 정치에 온전히 참여하고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개체 교회의 선교(G-1.0101)

개체 교회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이다. 개체 교회는 그러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성례전을 나누고, 사회 정의와 의를 대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에 접근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오늘날 같이 유동적인 세상에서는 “열방”이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 존속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기회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성의 은사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한다.

교회 회원권(G-1.0304)

개체 교회 안에 회원권을 구분하여 두는 것은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또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함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증거한다.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 개체 교회들과 지역사회들에는 이민법과 관련된 자신들의 신분 문제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적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나라의 법이 정의롭고 또한 우리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 또한 교회가 부름받은 소명이다.

교역 장로들과 새로운 이민 목회자 청빙(G-2.0505(a)(1))

비록 새로운 정치 형태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는 용어 대신에 “교역 장로”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규례서에 의하면 개체 교회들과 공의회들은 자기들의 사회 문화적 형태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규례서는 미국 장로교와 온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교단들과 미국 장로교 사이에 질서있는 목사의 교환이 허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았다(G-5.02). 이것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 적합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연방이민단체들과 협력할 때 중요한 조항이 된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의해 개체 교회들과 펠로십들이 미국 장로교에 의해 안수 받지 않았으며 또한 시민권자가 아닌 교역 장로나 목사를 청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록 등록 당시에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경력이 부족할지라도, 어떤 경우들에는 목사 고시를 보지 않은 새로운 이민 목사의 안수를 노회가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⁹

토론을 위한 질문들

우리 나라를 도전하고 있는 이민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민 가족들의 이별과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탐구해 볼 때, 특별히 생애를 피난자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삶을 탐구해 볼 때, 이것은 오늘날 이민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어떤 관점을 제공해 주는가? 혹은 어떤 관점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

¹ F-1.01

² Donald McKim, *Introducing the Reformed Faith: Biblical Revelation, Christian Tradition, Contemporary Significanc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Louisville, 2001)을 참조하라.

³ F-1.01

⁴ F-1.0301

⁵ F-1.0301

⁶ F-1.0302(a)

⁷ F-10302(d)

⁸ 모든 이민자들을 위한 지지와 환영에 관하여 217 차 총회(2006)록을 참조하라.

⁹ G-20505(a)(1). 이미 지적한대로, 새로운 정치 형태의 배후에 있는 특별한 정신은 자유와 융통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생각하며 G-2.0505(a)(1)을 보라: 1)목사는 이민 개체 교회나 펠로십을 섬기는 새로운 이민 목회자여야 한다; 2)노회는 그 이민 그룹을 선교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예외를 필요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3)이민 목사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경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 무흠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4)노회는 그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데 필수적이고 유익할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항이 사실이라면, 노회는 그 목사의 안수를 인정하고, 그 목사에게 목사 고시를 보라고 요구하는 것 없이 노회 목사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노회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항은 노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 준다. 노회는 다른 교단의 이민 목사가 섬기고 있는 이민 그룹을 선교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예외 조항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G-2.050(a)(1)은 오직 “새로운 이민 목회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 교단의 목사가 새로운 이민 목사가 아니라면, 그 목사는 목사 안수 고시를 포함하여 G-2.050(a)에 언급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